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825
----------	-----------

제안년월일 : 2019년 8월 29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제정안은 양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고, 관련법에도 ‘모·부성권 보장’으로 표기한 조문을 ‘모성권 보장’으로 하고 있어 이를 수정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가. 제정안에서 양성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으나 ‘모성권 보장’으로 표기한 조문을 ‘모·부성권 보장’으로 수정함(안 제4조).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p>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p>	<p>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p>
<p>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u>“모성권 보장”</u>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p>	<p>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관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u>“모· 부성권 보장”</u>으로 한다.</p> <p>제5조제2항제4조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p>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모성 보호의 개념이 모·부성권 보장의 개념으로 전환된 취지와 문언을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 중 “모성보호”를 각각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여성장애인 임신·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 보호와”를 “모성권 보장과”로 한다.

제4조 중 “모성 보호를 받을”을 “모성을 보장받을”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모성보호”를 “모·부성권 보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모성보호”를 “모성권 보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